
장애인 등록 시 장애유형별 필요 서류 안내

- 호흡기장애 -

2020. 01

본 자료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각종 서식을 재구성한 자료입니다. 장애인 등록을 위해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,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

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

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호흡기분과, 알레르기분과)·흉부외과·소아청소년과·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

장애진단 시 필요한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
호흡기 장애	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원인상병명, 정상시의 호흡곤란정도, 폐기능,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◇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◇ 늑막루를 조성한 경우 늑막루 조성 사실 기재
	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, 질환의 중증도, 정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◇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-ray 사진,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(기 검사자료 있을 경우 모두 제출) ※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,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(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정도 인정) ◇ 인공호흡기(24시간 사용자) 및 늑막루의 경우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◇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(장애진단서 포함)
호흡기 장애 진단시 Tip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검사소견,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함 ◇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함 ◇ 동맥혈 가스검사는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검사를 시행함 ◇ 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여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함.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함. 다만,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◇ 폐기능검사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 경우(예를 들어 기관지 확장제로 FEV1 이 12% 이상의 증가는 보이는 경우)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 다시 평가함 ◇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면서 폐기능이 호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판정을 할 수 있음
<p><장애심사서류 완화></p> <p>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: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·면·동에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</p>		
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

진단 대상자	성명	성별	
	주민등록번호		
	주소 (전화번호:)		
장애 상태	장애유형		
	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		
	장애원인		
	장애 발생 시기		
진료기관 및 의사	의료기관	의사	진료기간 . . . ~
	의료기관	의사	진료기간 . . . ~
진단의사의 소견	※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·검사결과·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		
재판정	필요사유	재판정할 시기	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 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진단의사명
(의사 면허번호)
(전문의 자격번호)

(서명 또는 인)

(전문의 과목)

진단기관명

직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1.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.
2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사람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.
3. 장애유형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.
4.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-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,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.
5.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